

EC 通商政策의 決定體制 및 特性에 대한 연구

崔 炳 善*

〈目 次〉	
I. 서 론	III. EC 공동통상정책의 결정체제와 특성
II. EC의 정책결정기구 및 체제	IV. 결 론

〈要 約〉

1987년 단일유럽법의 시행 이후 EC는 단일시장 형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통합체로의 발돋움을 계속하고 있다. EC의 이러한 노력은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에 EC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EC의 웅장한 시도는 앞으로의 세계 정치경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와같이 급변하고 있는 EC의 정책 가운데 우리와 관련이 깊은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정책결정 메카니즘과 정책결정과정, 그 결과로 나타나는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은 EC회원국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 또한 GATT체제 하에서의 EC와 제 3국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EC의 통상정책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보호주의적인 색채, 산업정책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EC의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는 단지 통상정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EC 단일시장의 형성과정, 그것의 진전속도, 방향 및 구체적 내용, EC 경쟁정책의 적용 강도,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정책의 운용방향, 각종의 사회적 규제(환경, 소비자안전보호 등)에 대한 정책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I. 서 론

1957년 로마조약으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가 탄생된 이후 EC는 로마조약에서 규정한 12년이란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이 경과하기도 전인 1968년이 당시 6개 회원국 사이에 존재하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로¹⁾부터 1980년대의 초반까지의 기간동안에 유럽공동체 결성은 지지부진함

*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副教授

을 면치 못하였다. 이것은 한편으로 1970년대의 제 1~2차 석유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각 회원국이 보호주의적 정책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으로 1973년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이 EC에 추가로 가입하는 과정에서 회원국간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기 때문이다.¹⁾

그러나 1980년대의 중반에 이르면서 EC회원국들은 다시 유럽공동시장의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EC가 미국 및 일본과의 무역 및 기술개발 경쟁에서 뒤지고 있다는 자각에 따른 것이었다. 국제경쟁에서 열세에 처하게 된 EC의 거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강력한 정치적 로비도 주효하였다.²⁾ 또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회원국들의 공통적 인식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5년 EC집행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크들로거(Jacques Delors)의 강력한 지도력 하에서 집행위원회는 1992년말까지 EC들 사이의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담은 「1992년 단일시장 추진계획」이라는 白書를 작성하였다. 이 백서는 EC의 시장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각종의 장벽을 크게 물리적 장벽(physical barriers),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재정적 장벽(fiscal barriers)의 셋으로 분류하여 EC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을 정리한 것이었다.³⁾

이 백서의 간행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단일시장을 추진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1986년 EC회원국들은 「EC 단일시장 형성 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로마조약을 수정하는 단일시장법(Single European Act)을 제정하였다.⁴⁾ 이후 각 회원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87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발생한 이 법의 취지에 따라 EC의 공동시장 결성노력은 이후 급속한 속도로

1) EC의 변천에 관해서는 Dennis Swann, *The Economics of the Common Market* (London: Penguin Books, 1990), pp.1-43; Keesing's Report, *The European Communities: Establishment and Growth* (New York: Scribner's Sons, 1975); Lawrence B. Krause(ed.), *The Common Market: Progress and Controvers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4); Steven Joshua Warnecke(ed.), *The European Community in the 1970'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2) 등 참고.

2) *The Economist*, "A Survey of Business in Europe," June 8, 1991 참고.

3) 이 내용의 간단한 요약은 Clifford Chance, *1992: An Introductory Guide*, Nov. 1988; *The Economist*, "A Survey of Europe's Internal Market," July 8, 1989 및 "A Survey of the European Community," July 7, 1990 참고.

4) 각 회원국이 이 법안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들로어(Delors) 위원장의 정치적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전되어 왔다.⁵⁾ 단일시장법은 특히 지지부진했던 EC의 입법과정 및 의사결정 절차를 수정함으로써 단일시장 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고, 각 분야에 걸친 EC 주요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지침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⁶⁾

1987년 이후 EC단일시장법의 시행과 함께 EC의 단일시장형성 계획은 급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EC의 단일시장 형성의 기초가 되는 282개 법안(single market legislation) 가운데 상당한 법안이 이미 작성되어 1991년 현재 50여개 법안의 채택만을 남겨놓아 EC의 단일시장 형성이 공상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이 유럽의 내부지향적(inward-looking) 전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유럽요새(Fortress Europe)의 구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고 이후 세계경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

사실 EC의 내부지향성은 EC단일시장의 외연적 확대를 추구하는 다양한 노력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의거 1984년 1월로 EFTA와 일반관세산품에 대한 관세장벽 및 수량제한을 사실상 완전철폐한 EC는 동년 4월 룩셈부르크 EC/EFTA 합동각료회의이후 EC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EFTA 7개국과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창설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고 1991년 10월 19개국 EEA 합동각료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동년 11월에는 EEA 창설협정에 가조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조인에 앞서서 협정문 초안에 대한 EC집행위원회의 법률적 검토요청을 받은 EC 사법재판소가 “동 협정문에 의거한 EEA 사법재판소의 권한과 기능은

5) 이 때로부터 EC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라는 표현 대신 내부시장 또는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말하면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그냥 EC(European Community)라고 불리우기 시작할 것도 이 법안이 제정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6) 단일시장법은 “EEC조약에 근거하여” EC 단일시장의 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통하여 만들어 지는 각종의 새로운 규정(provisions)에 의거하여” 단일시장의 형성에 필요한 회원국 입법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폭의 융통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Hugo Dicke and Rolf J. Langhamme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External Dimension of the EC Internal Market,” A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the Single European Marke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as an NI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une 18~19, 1990, pp.14-15; The *Economist*, “EEC Democracy: Power Games,” July 22, 1989.

7) Georg Koopmann and Hans-Eckart Scharrer, “Scenarios of a Common External Trade Policy for the EC after 1992,” A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EC: 1992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 as an NI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June 18~19, 1990, p.3.

EC사법재판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EC조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가조인이 연기되었고 현재 EEA의 장래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⁸⁾

EEA의 창설은 EFTA 회원국의 개별국가로서의 EC가입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인하여 EFTA회원국들은 EEA 창설을 재고하고 관망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⁹⁾ 아무튼 EEA의 창설은 동구권까지를 포함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의 중간단계로서의 의미를 띠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EC가 어느 정도로까지 확대되어 나가게 될 것인지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1991년 12월초 EC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은 EC가 단순한 경제통합과 통화통합을 넘어서서 공동의 외교 및 안보정책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통합의 차원으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 조약은 각 회원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조인되고 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아무튼 이 조약을 통하여 EC 회원국들은 1996년까지 EC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의 재정적자의 축소, 인플레이율의 저하 등 회원국의 경제여건이 성숙되면 1997년 1월, 늦어도 1999년 1월부터는 단일통화를 사용하기로 한다는 뜻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인구 3억 5천만명을 포용하고 있고 단일 경제권으로서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력을 갖고 있는 EC가 경제통합체만이 아니고 정치적 통합체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이와같이 EC가 1985년 이후 정치경제통합체의 형성을 향하여 대약진(great leap forward)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국제경쟁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뒤지고 있다는 경제적 위기감에 관하여는 앞에서 간간히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1989년 동구권의 변혁에 따라 이들 국가들이 장차 EC에의 가입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EFTA를 포함하여 이들 국가들이 EC에 참여하게 될 때 EC의 단일시장 형성이 곤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EC의 외연적 확대(widening)에 앞서서 EC 단일시장의 형성을 내적으로 더욱 가속화(deepening) 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Delors 위원장 등 연방주의자(federalists)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1990년의 독일

8) *The Economist*, "The EC and EFTA," Dec. 21, 1991.

9) *The Economist*, "Endlessly Elastic Arrangement," Feb. 15, 1992.

10) *The Economist*, Nov. 30, 1991; Dec. 14, 1991; Jan. 4, 1992; Feb. 1, 1992 등 참고.

통일에 즈음하여 불란서 등 주변국들은 통일독일의 견제를 위해서, 독일 스스로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각각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실질적인 EC결성에 강한 집념을 갖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1990년 이후 해마다 두차례 EC정책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것은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¹¹⁾

이 논문은 이와같이 급변하고 있는 EC의 정책 가운데 우리와 관련이 깊은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정책결정 메카니즘과 정책결정과정, 그 결과로 나타나는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은 EC회원국 가운데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한 국가와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국가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 또한 GATT체제 하에서의 EC와 제3국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EC의 통상정책 결정구조와 체제, 그리고 그것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통상정책문제들을 중심으로 EC가 왜 어떠한 입장을 취해 왔는가? 또한 현재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에서의 협상방향과 관련하여 EC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떤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인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려고 한다.

II. EC의 정책결정 기구 및 체제

12개 회원국에 구속력을 지니는 유럽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은 대단히 복잡하다. 아테에서는 로마조약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5개 EC의사결정기관과 1986년의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 SEA)에 의해 추가된 유럽이사회 등 EC의 현행 의사결정기구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서 각 기구의 권한과 위상, 상호작용관계 등을 분석하려고 한다.¹²⁾

11) *The Economist*, "Schools Brief: the European Community," Jan. 25, 1992.

12) S. v. v. v., *op. cit.*, pp. 44-64; Robert M. Maclean, *European Community Law* (London: HLT Publications, 1991), pp. 17-43; Dicke and Langhammer, *op. cit.*, pp. 14-5; Anothny J. Kerr, *The Common Market and How It Works* (Oxford: Pergamon Press, 1984), pp. 56-68;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EC. 구주통합의 현재」, pp. 43-85; 경제기획원, 「EC기능 및 통합의 효과와 아국의 대응방안」 1989. 7 등 참고.

1.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보통 유럽정상회담(European summit meeting)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유럽 경제공동체(European Communities)와 유럽정치공동체(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를 포괄하는 유럽통합과 관련한 사실상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영역을 찾아내고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통합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돌파구를 모색하며, 유럽통합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이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이사회는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는 아니다. 유럽공동체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공식적인 입법기구(law-making body)로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는 어디까지나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유럽자료이사회(European Council of Ministers)이다. 그러나 단일유럽법 제정 이후 유럽이사회는 종래 자료이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한 정치적 타협안을 도출해 내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회원국 정상들의 공동성명(communique)을 통하여 EC의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유럽이사회에서의 결정은 자료이사회에 넘겨져 수정됨이 없이 공식적인 통과절차를 밟게 된다. 이점에서 유럽이사회는 유럽의 정치경제통합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정상회담이 유럽이사회로 불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1974년 파리정상회담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의 법적 지위는 유럽공동체의 어떤 조약에도 명시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6년의 단일유럽법이 제정되면서 유럽이사회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게 된 것이다. 동법 제2조는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의 정상들과,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위원장으로 구성되어서 년 2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며, 이 이사회에 각국의 외무장관과 집행위원회 위원 1인이 참여하여 보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조는 유럽이사회가 기존의 어떤 유럽공동체(ECSC, EEC, Euratom,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의 고유권한도 침범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어서 여전히 공식적인 입법기구로서의 권한은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동법 제30조 1항은 회원국은 유럽의 외교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공동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유럽이사회가 유럽의 공동외교정책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몇년간 유럽이사회의 주요한 의제가 되었던 것들을 살펴보면 독일통일 문제, 즉-유럽문제, 정치통합 및 통화통합, 테러문제, 남아프리카에 대한 제재 문제 등이었다. 이런 예들은 유럽이사회가 회원국간의 대외정책의 조정, 공동행동(joint action), 공통의 원칙과 목표의 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인 주요관심사에 대한 EC 영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유럽이사회의 議長團 순번은 회원국의 자국언어로 표기한 국명의 알파벳순으로 정해지고 그 임기는 6개월이다. 그러나 EC의 회원국수가 12개국으로서 짝수이기 때문에 회원국에 따라 의장국 순번이 해당연도의 전반기 혹은 후반기에만 도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두개의 순번제도를 정하고 있다.¹³⁾ 즉 두 나라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한 해의 전반기에 의장국이 된 나라는 다음번 차례에서는 후반기에 의장국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1992.1~6)의 의장국은 포르투갈이고 금년 하반기의 의장국은 영국이다. 그러나 6년후에는 영국이 전반기에 그리고 포르투갈이 후반기에 의장국이 되도록 되어 있다

2. 각료이사회(European Council of Ministers)

EC의 공식적인 입법권한은 보통의 경우 이사회로 약칭하는 각료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다. 각료이사회에는 두가지로 형태가 있다. 하나는 회원국의 외무장관들이 회합하여 여타 각료이사회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이사회(General Affairs Council)이다. 다른 하나는 정책사안에 따라 농업, 재무, 교통, 상공, 수산, 교육, 환경장관들이 회합하는 전문이사회(Specialized Council)들이다. 이러한 각료이사회는 모두 10여개에 달하고 있고 연간 총 80회 이상 개최된다. 각료이사회의 의장은 유럽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국가의 각료가 6개월씩 돌아가면서 맡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유럽통합작업의 진전양상과 속도는 이 6개월마다 바뀌는 의장국의 영향력과 지도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기 된다.

이외같이 각료이사회의 구성과 조직은 斷續性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료이사회 운영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기관이 상주대표

13) 다시 말하면 안전에 따라 어떤 안전은 매년의 전반기에 또 다른 안전은 매년 후반기에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회원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의장국이 되지 않는 전반기 또는 후반기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안전이 다루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어떤 회원국이 어떤 시기에 의장국이 되느냐가 EC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이것의 불어 표현의 첫글자를
다서 COREPER라고 부른다)이다. 이 위원회는 각 회원국에서 파견된 12명의
EC주재대사(ambassador)들로 구성되어 매주 회합을 가지며 회원국 정부와 EC
기관사이의 상호연락업무와 함께 EC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입법초안을 각료이
사회에 상정하기 앞서서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상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COREPER에서 만장일치로 협의된 안건은 보통 각료이사회에
서 수정없이 통과되고 있다.¹⁴⁾

각료이사회 의 권한과 기능으로서는 첫째, 각종 유럽공동체 법안의 채택, 둘
째 유럽공동체 정책의 수립, 셋째 EC와 제 3국간 국제협정의 체결, 넷째 유럽
의회와 공동으로 유럽공동체 예산 초안의 작성, 다섯째 EEC조약 목표의 달성
을 위한 제반 정책의 결정 등이다. 각료이사회는 EEC 조약 145조에 의거 이사
회가 결정한 규칙과 정책의 집행권한을 EC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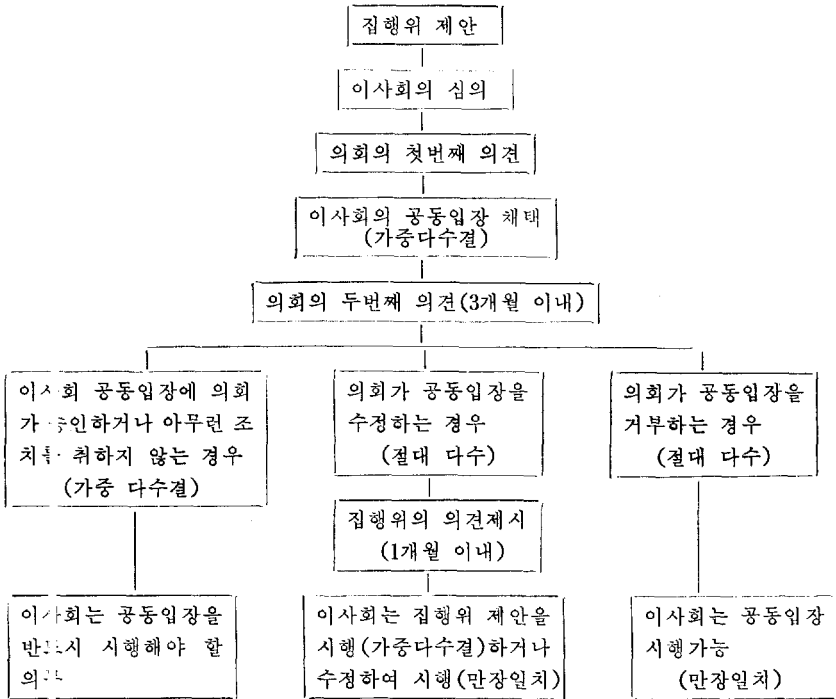
각료이사회 의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EC입법의 시행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EC의 입법과정은 대단히 복잡한 데 그 복잡성은 단일유럽법 제정
이후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것은 원래 입법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
던 EC의회가 점차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통적인 입법과정 외에 단일유럽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입법절차로서 협력절차
(cooperative procedure) 규정에 의하면 입법내용이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배
치(EEC조약 7조 2항), 근로자와 서비스의 자유이동(49조), 역내시장의 설립 및
유형과 관련된 조화조치(harmonization measures)와 관련될 때에는 각료이사회
는 통상의 EC의회의 자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료이사회가 도출한 공동입
장(common position)에 대해 또 한 차례의 EC의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
다. 이 때 만일 EC의회가 이사회의 공동입장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면 EC집
행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각료이사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도 1〉 참고). 이러한 단일유럽법에 의한 협력절차의 규정은 각료이사회
의 의사결정을 상당히 제약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¹⁵⁾

다음으로 각료이사회는 자국이익을 대변하는 12개 회원국 각료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에 표결방식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로마조약은
제 148조에 각료이사회 의 표결방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단순과반수(majority

14) *The Economist*, "EEC Council of Minister," Feb. 25, 1989 참고.

15) Chance, *op. cit.*, pp. 88-92 참고.

<도 1>협력절차(cooperation procedure)



voting)에 의한다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규정에 따라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표결방식 또는 만장일치(unanimity)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EEC의 과도기(transition period)였던 1965년까지는 거의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 표결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965년 이후 유럽통합의 가속화를 위해 가중다수결 표결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란서의 드골정부가 강력한 이익을 제기하여 1965년에 소위 "룩셈부르크 합의(Luxembourg Accords)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회원국의 매우 중대한 이익(very important interests)이 걸려 있을 때 이사회는 합리적인 시간안에 모든 회원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해결책의 모색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하나의 회원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경우에 이사회 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각 회원국이 처한 정치적 현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 결과 만장일치제의 악용에 대해 여타 회원국의 반발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가중다수결 표결방식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특히 1987년의 단일유럽법은 단일시장 형성을 촉진할 목적으로 상

다수의 만장일치제의 적용대상을 가중다수결 표결방식으로 대치하였다. 그 결과 평균 2년 가량을 소요했던 안전처리 소요기간이 일년이내로 단축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¹⁶⁾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될 것처럼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표결방식의 선택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서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표결방식은 독일, 불란서, 영국, 이태리 4국이 각각 10표, 스페인이 8표, 벨지움, 그리스, 네델란드, 포르투갈이 각 5표, 덴마크, 아일랜드가 각 3표, 그리고 룩셈부르크가 2표를 배분하여 총투표는 76표중 54표 이상의 표를 획득하면 안전이 가결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하에서 다섯 큰 나라가 48표 이상을 모을 수 없어 작은 나라들의 의사가 반하여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없고, 나머지의 작은 일곱나라도 큰 나라들의 표결에 이길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또한 두 큰 나라와 작은 한 나라(룩셈부르크 제외), 소위 “Two big plus one small state”가 연합하면 23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안전도 부결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사회에서의 표결양상은 다음에 자국의 이해관계가 큰 안전에 그 회원국의 지지를 약속받는 조건으로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안전을 지지해 주는 록-롤링(log-rolling) 방식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유럽단일시장 형성을 앞두고 이사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전만 해도 300개에 달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사결정 사항을 형태별로 본다면 크게 규정(regulations), 지침(directives), 결정(decisions)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¹⁷⁾ 먼저 규정은 이사회가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제정하는 입법조치로서 채택 즉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개별국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침은 역시 이사회의 입법조치이기는 하나,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국내법이 EC법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역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대부분의 입법조치는 바로 이 지침의 형태를 띠고 있다. 지침에는 보통 회원국이 지침의 시행을 완료해야 할 시한(time limit)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결정은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회원국 또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이 밖에 이사회는 회원국에 대해 권고(recommendations)나 의견(opinions)을 제시할 수 있지만

6) *The Economist*, Feb. 25, 1989.

7) 물론 이것을 EC의 법체제로 해석할 수도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3.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사회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대표로 구성된다면 집행위원회는 EC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EC의 집행기관이다.¹⁸⁾ 집행위원회는 현재 17명의 집행위원(5대국 각 2명, 7개 소국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회원국 정부가 여타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재임할 수 있다. 집행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집행위원은 c와같이 각 회원국 정부에 의해 임명되지만 개별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회원국 전체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서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출신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공정한 입장에서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개별 사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¹⁹⁾ 집행위원들은 “내각(cabinet)”이라고 불리우는 소수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총국(directorate-general)이라고 불리우는 23개의 국이 있고 총 16,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집행위원들은 담당업무에 따라 1~2개의 총국을 지휘하고 있다. 총국의 책임자인 총국장은 보통 대국이 2명, 소국이 1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보통 집행위원과는 국적을 달리하는 자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

집행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보통 단순다수결로 하며 집행위원회에서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것은 집행위원들이 출신국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EC의 정책문제를 다루게 하기 위함이다.

EEC조약 155조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공동체 조약을 수호하고 이것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며, 각종의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며, 2종의 국제협정의 체결 및 교섭에 임함으로써 EC의 이익을 대내외적으로 촉진하고, 이사회에 위임을 받아 EC정책을 집행하는 권한과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선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될 EC 공동정책을 독립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EC의 입법 및 정책방향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앞의 도 1에서 본

18) EC의 집행위원회는 원래 ECSC의 High Authority, EEC 집행위원회, Euratom 집행위원회의 세 기관이 별개로 기능하였으나 병합조약에 의거 1967년 이후 현재와 같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었다.

19) 집행위원들의 출신국에 대한 입장에 대한 몇가지의 사례에 대해서는 *The Economist*, March 25, 1989 참고.

마와 같이 이사회가 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표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동정에 따라 자신의 제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특히 1987년의 단일유럽법 제정 이후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더욱 약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입법 및 정책제안의 표결방식이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만장일치의 표결방식하에서 집행위원회의 제안은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만한 제안이 아니면 안되었고, 그러나, 표결방식이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한두 회원국이 반대하는 것에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집행위원회가 보다 많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집행위원회는 EC조약 조문의 불명료성 또는 모호성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공동정책의 실현을 가속화하려는 편법을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 즉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조문보다는 가중다수결로 처리가능한 조문에 근거하여 입법안 및 정책안을 이사회에 제안함으로써 집행위원회의 의지를 보다 쉽게 관철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단일유럽법은 집행위원회에 환경에 관한 입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표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자 집행위원회는 이 규정 대신 가중다수결로 처리될 수 있는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조화(harmonization) 조치 규정(EEC 조약 90조)에 근거하여 환경과 관련된 지침(directive)을 제안하였다. 그러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집행위의 이런 기도를 좌절시켰다.²⁰⁾ 이와 달리 이사회에서 가중표결로 통과된 집행위원회의 제안의 근거규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다시 말하면 만장일치로 처리되어야 할 안건이라는 주장)로 회원국이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승리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EC 형성에 조급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EC 민주주의 측면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가 제정 또는 결정한 입법이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사회로부터 상당히 광범위한 집행 및 입법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예를 들면 EEC조약 87조는 이사회에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집행위원회는 범위반사례를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회원국에 대해 필요한 조

20) 이것과 이와 유사한 에피소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The Economist*, July 22, 1989 참고.

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집행위원회는 단순한 집행권한만이 아니고 입법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농업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경쟁정책과 농업정책 분야는 집행위원회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EC조약의 수호자”로서 회원국과 EC기관들이 EC법률을 시행하도록 보장하는 의미에서 막강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즉 회원국의 공동체의무위반 사항에 대하여 또한 권한을 남용하는 유럽공동체 기관에 대하여 통고하거나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한 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집행위원회의 제소건수는 총 605건에 달하고 있고 주요 피제소국은 이탈리아, 불란서, 그리스, 독일의 순이다. EC법률의 궁극적 시행주체는 물론 각 회원국정부라고 할 수 있으나,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집행위원회가 공동정책을 시행하는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존재이며 단일시장 형성의 심장부로서 기관차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는 통상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주권국의 의회와는 전혀 다르다. 유럽의회는 초기에 각 회원국의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나 1978년 유럽의회의원선거법 제정에 따라 1979년부터 각 회원국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현재의 의원정수는 518명으로서 대체로 회원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5년이다. 유럽의회에서 이들의 의석배치는 국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정당 또는 정책노선에 따른다. 1991년 2월 현재 유럽의회의 다수당은 사회당이며 그 다음이 유럽국민당, 유럽민주당 순이다.

유럽의회는 당초 자문역할만을 담당하도록 의도되었다. 그러나 유럽의회의 권한은 점차 보다 중요해져 가고 있다. 특히 단일유럽법은 유럽의회가 유럽의 공동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유럽의회의 권한은 입법기관으로서의 권한이라기 보다는 자문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에 그치고 있다. 유럽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서는 첫째, 새로운 회원국의 EC가입 및 제 3국과의 협정에 대한 동의권, 둘째 집행위원회에 대한 질의권 및 보고청취권, 셋째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권(국회계석의

원의 2/3의결 필요), 넷째 EC예산의 승인 및 수정권, 다섯째, 이사회에 대한 의견제시권 등이다. 이렇게 볼 때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사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재판소는 12개 회원국이 임명한 12명의 판사와 5대국이 돌아가면서 차례로 임명하는 판사 1인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된다. 5대 회원국에 추가적인 판사임명권을 주고 있는 것은 판사의 수가 짝수로서 단순다수결에 의한 표결시 과반수득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법재판소의 판사는 6개 회원국에서 임명된 검찰관(advocates-general)의 보좌를 받는다.

사법재판소의 주요기능은 EC조약에 의거 이사회나 집행위원회가 제정하는 법률(규정, 지침,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위원회가 제소하는 회원국의 EC조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토한다. 물론 사법재판소에 대한 제소권한은 회원국, EC기구, EC에 속한 자연인, 법인 모두에게 인정된다. 회원국의 법원도 EC재판소의 예비판정을 구하기 위해 EC사법재판소에 사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가 회원국의 법원과 계층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원국의 법원이 EC법률과 관련된 사안이 제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사법재판소에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고 그 회부결과에 의거하여 판결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단일유럽법에서는 사법재판소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 재판소 산하에 일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89년에 12명의 판사로 일심법원이 구성되었다. 일심법원의 주요 관장사항은 부과금, 생산통제, 가격책정과 관련한 행위 및 가격협정, 경쟁정책에 관련된 사항들이다.

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판결결과를 존중하지 않을 때 이것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그러나 사법재판소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여타 회원국들의 집단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III. EC 공동통상정책의 결정체제와 특성

EEC조약 113조는 12년간의 과도기간을 거친 이후 EC각국이 통일적인 원칙(uniform principles)에 입각하여 적용해 나갈 공동통상정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권 및 제 3국과의 협상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하고 이사회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동통상정책이라 함은 역외 공동관세기책, 이를 위한 관세협상, 무역자유화, 수출정책, 기타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조치의 통일성 확보 등을 포함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EC의 공동통상정책은 우선 상품(농산물 제외) 무역과 관련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역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정책이 있다. 역외공동관세와 관련하여 EC는 많은 개발도상국과 다층적인 특혜관계를 맺고 있고 그 결과 특혜관세제도(preferential tariff system)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둘째, 넓은 의미에서의 EC 특유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가 있다. 이것은 EC 수입 공통규정의 적용을 받는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수입감시제도와 보호조치가 있다. 셋째, EEC조약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잔존수입규제와 각종의 회색조치(수출국의 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가 있다. 넷째, 불공정무역에 해당하는 반덤핑 및 보조금지급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조치)와 그밖의 불공정무역행위 및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보통 신통상정책수단(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s)으로 불리운다)들이 있다.²¹⁾ 다섯째, 개별 회원국 또는 EC의 쌍무 또는 다자간 협정이 있다. 여섯째, 이상의 여러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산지규정(rule of origin)이 있다.²²⁾

EC 단일시장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역외국과의 통상정책은 EC의 공동통상정책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왜냐하면 각 회원국의 산업의 발전단계에 차이가 크고 따라서 대외경쟁

21) 여기에서 말하는 신통상정책수단이란 EC가 1984년 이후 미국통상법 301조에 상응하는 정책수단으로서 EC수출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EC집행위원회에 제소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메카니즘을 말한다. 무역상대국의 불공정행위에는 이미 주어진 양허(concessions)의 정치 또는 철도, 기존 관세율의 인상, 수량제한의 부가가 포함된다. 이 신통상정책수단은 1984년까지 발동된 사례가 없고 아직은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본논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22) 이 밖에 서비스무역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또는 기업설립(establishment)의 자유 그리고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의 적용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력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시장의 형성은 개별 회원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국시장이 두가지 측면에서 경쟁압력을 동시에 받게 됨을 의미한다. 첫째, EC 역내국 사이의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하여 경쟁력이 높은 회원국으로부터 경쟁력이 낮은 회원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뿐만 다른 회원국을 통하여 이루어진 수입이 간접수입의 형태로 국내시장에 침투하게 된다. 둘째, 개별 회원국이 유지해 왔던 역외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들이 모두 EC차원의 수입규제 및 제한조치로 대체되어야 하므로 역외국에 대한 공동통상정책의 水位에 따라 회원국 산업은 차별적인 경쟁압력에 봉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공동통상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대외적 경쟁력이 강한 회원국과 경쟁력이 약한 회원국 사이에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회원국의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전통적인 산업부문에 있어서 상당수의 EC회원국들이 안고 있는 산업조정 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EC집행위원회의 공동통상정책은 수입규제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수입규제는 限時的으로 운용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게 될 것이기는 하다. 한편 EC단일시장 형성에 따른 사회정책적 차원(social dimension)에서의 고려와 EC의 기술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새로운 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일본이나 한국을 포함한 선진개도국의 EC시장접근을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EC가 공동통상정책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고 회원국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EC 공동통상정책은 어떤 경향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냐에 모아진다.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EC 단일시장의 실질적인 추진성과와 방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한 EC 시장에 대한 우리의 합리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각각의 정책들과 관련하여 주로 회원국과 EC 집행위원회의 관계,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조정과 기술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1. 역외공동관세 정책

EC의 역외공동관세는 多層的 構造를 지니고 있다. 우선 GATT 체약국에 적용되는 최혜국(MFN) 관세가 있다. 최혜국 관세는 쌍무협정에 의거 최혜국대우가 보장되는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음으로는 EC의 각종 특혜무역협

정에 의거한 특혜관세가 있다.²³⁾

(1) 최혜국 관세

EC의 역외공동관세제도는 당초의 EC회원국가에 관세 동맹이 1968년 7월에,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의 EC가입에 따른 보완작업이 1977년 7월, 그리스, 포르투갈의 EC가입에 따른 보완조치가 1986년 1월로 완료됨으로써 수립되었다. 그동안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관세인하협상 결과 EC의 역외공동관세의 수준은 급속하게 인하되었다. 역외공동관세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세관련법규가 회원국간에 통일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효과성이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회원국간의 산업발전의 수준차에 따라 아직도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EEC조약 27조가 관세율의 통일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정하지 않고 다만 EC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국내관세법규를 상호접근시켜 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C의 GATT체약국 등에 대한 MFN관세율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²⁴⁾ 1988년의 통계에 따르면 EC의 평균관세율은 단순평균관세율이 7.3%, 수입가액에 의한 가중평균관세율이 5.3%로 나타나고 있다.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은 농산품에 대한 관세보다 낮으며 대체로 부문간에 커다란 편차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산품에 대한 단순평균관세율은 6.4%, 농산품에 대한 단순평균관세율은 12.4%이다. 특히 농산품의 경우에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데 종량세율 또는 가변수입과징금(variable levies)의 적용을 받는 농산품은 전체 농산품 수입의 1/3에 달한다. 그리고 농산품 가운데 특정 품목(예: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 그리고 꽃종류)은 계절에 따라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계절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혜국대우를 받는 모든 국가로 부터의 거의 모든 수입(총 9,500여개의 관세 품목 중 92%)은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관세양허를 받고 있다. 공산품은 총관세품목 7,484개 가운데 22개 품목만이 양허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농산물은 관세품목중 65%만이 양허되어 있다(그러나 이것은 농산물 수입의 88%에 해당한다.) 관세율 구조를 보면 무관세품목은 약 10%에 머물고 있고 가공단계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구조(tariff escalation)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23) EC의 다층적 무역구조에 대해서는 Koopmann and Scharrer, *op. cit.*, pp. 3-11. 특히 관세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G.N. Yannopoulos, *Customs Unions and Trade Conflicts*(London: Routledge, 1988), pp. 28-56 참고.

24) 대한무역진흥공사, 「EC의 통상정책—GATT 무역정책 검토보고서」, 貿公資料 91-4, pp. 158-63.

현상은 특히 금속제품, 담배 등과 같은 품목의 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2) 특혜관세

EC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⁵⁾ 여기에는 EC와 전통적인 경제 및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LOME협정국가(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와 카리브연안 및 태평양 연안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동구권 국가에 대한 특혜관세,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EFTA국가에 대한 관세, 개도국 전반에 적용되는 GSP관세가 있다.

이와같은 자유무역협정국 또는 특혜협정 수혜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EC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물론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EC총 수입의 25% 수준)을 점하고 있는 것은 EFTA국가들이다. 그 다음이 GSP 수혜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석유수출국가를 제외하면 여타의 GSP 수혜국의 점유율은 크게 떨어진다. 다음으로는 지중해연안국가, LOME협정 체결국가들의 순이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특혜관세는 물론 전품목에 대해 공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농산품은 특혜관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관세양허의 범위가 다소 제한되어 있다. GSP 역시 일부 공산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어떤 품목은 특정 원산지국가로 부터의 수입에만 GSP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²⁶⁾ 뿐만 아니라 GSP 수입의 약 60%는 소위 민감품목(sensitive items)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실링(ceilings)의 적용 또는 수입감시를 받으며, 이 실링을 초과하는 경우에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measures)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혜관세의 실효성은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1988년의 통계에 따르면 GSP수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이들 국가의 대 EC수입의 47%에 불과하다. 또한 GSP 수혜에 있어서 선발개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발개도국에 대한 GSP공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2. 긴급수입제한조치

EC는 1982년부터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EC역내산업에 악영향을 줄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공통규정을 제정시행하고

25) EC의 다양한 특혜 및 차별적 무역협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R.C. Hine,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Trade* (Sussex: Wheatsheaf Books, 1985), 제 8~12장 참고.

26) 상계서, pp. 164-5.

있다.²⁷⁾ 이것이 EC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288/82호이다. 이 규정은 두가지의 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체적 수입제한조치를 취함이 없이 당해상품의 수입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수입감시(surveillance)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조치(protective measures)라 불리는 것으로서 GATT 19조에 기초한 통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escape clause or safeguard)에 해당한다.²⁸⁾ 이 규정은 MFN에 의해 규제되는 섬유제품,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국영무역국가(state trading countries), 그리고 중국과 쿠바의 상품을 제외한 모든 무역상품에 대내 적용된다.

(1) 수입감시제도

수입감시제도는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EC 역내산업에 피해(이때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를 주고 있거나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동 품목의 수입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수입물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려는 목적에서 취해진다. 특정품목이 감시품목으로 지정되면 수입업자는 EC 회원국 정부가 발행 또는 인증하는 수입서류(import documents)를 교부받지 않고서는 동 품목의 수입행위를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수입서류는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수입규제가 행해진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상품이 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입규제 효과를 발휘한다. 첫째, EC가 해당상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표명하는 뜻이 있다. 둘째, 수입감시조치를 실시한 후 당해 수입이 역내산업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술하게 될 보호조치로 이어지게 되므로 그 효력이 담보된다. 셋째, 통상문제가 야기되면 그것이 법적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정부간 협상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감시조치는 수출국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도 수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압력을 가하게 된다.

수입감시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운영된다. 특정품목의 EC수입이 급증함으로써 동종제품 또는 그것과 경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자국의

27) 通商産業省, 「米國. EC 通商關係法 實務必携」, pp. 655-701; 대한무역진흥공사, 「EC 공동수입규정해설」, 무역자료 1985. 12, pp. 24-30 참고.

28) 이사회 규정 288/82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이외에 각 회원국이 공공정책 수행목적에서 각종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중도덕, 공공의 안전, 인간,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국보급 물건의 보호, 공업소유권의 보호 등 공공정책적 필요케시, 또는 외환거래와 관련하여 회원국은 임의로 수입의 금지, 수입수량의 제한 수입감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가 피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수입감시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회원국은 이러한 뜻을 EC 집행위원회에 통보한다. 그러면 집행위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하고 타회원국에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후 이 문제는 EC의 각회원국 대표와 집행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집행위 대표가 의장이 된다)에서 협의되게 된다. 이 자문위원회에서는 당해 상품의 수입조건과 수입추이 및 동향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대해 협의한다. 자문위원회에서의 협의 결과 공동체 차원에서 조사(investigation)를 개시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 EC 집행위원회는 EC관보에 이 사실을 공고하고 조사를 개시한다.

EC 집행위의 조사결과 집행위가 당해 품목의 수입이 EC 역내생산자에게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동 품목에 대하여 수입감시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동체 이익(Community interest)에 합치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집행위는 수입감시조치를 취한다. 수입감시조치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EC회원국 정부의 수입서류 발급 또는 인증(endorsement)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통 1년을 단위로 시행된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위 공동체 차원에서의 수입감시(Community surveillance) 제도이다(제11조).

집행위원회가 EC차원의 수입감시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회원국은 집행위원회 결정을 EC이사회(Council)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회원국의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표결로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회원국의 위원회결정에 대한 심사신청 3개월 이내에 아무런 결정을 취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제15조 5, 6항).

이와는 별도로 애초에 문제를 제기한 회원국은 자문위원회에서의 협의 이후 3일이 경과하기 까지 집행위원회가 수입감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태에 직면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감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을 공동체 차원의 수입감시조치와 구별하여 국별 수입감시조치(national surveillance)라고 부른다. 국별 수입감시조치가 취해지면 수입업자는 당해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서류를 취득해야만 수입행위를 할 수 있다. 물론 당해 회원국은 이 사실을 집행위에 통보해야 하고 집행위는 이 통보를 받아 여타 회원국에 통지한다. 이와같이 집행위원회가 공동체 차원의 수입감시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개별국에 독자적으로 수입감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EC의 수입감시조치와 관련한 규정이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지 못함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EC수입감시조치는 그동안 한국산 VCR, 한국 및 대만산 신발류, 일본산 기계류 및 가전제품, 지중해연안국가산 섬유 및 의류제품 등에 대해 발동되었고 계속 연간단위로 연장되어 왔다.²⁹⁾

(2) 보호조치

보호조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GATT 19조에 입각한 통상의 긴급수입제한조치로서 공동체내에 특정상품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긴급대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회복불가능한 그것이 공동체내의 동종상품의 제조업자에게 큰대한 피해(substantial injury)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을 때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 의해 취해진다. 특정 회원국이 보호조치를 요청한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요청이 있는지 5일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집행위원회는 독자적 판단에 따라 보호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 때 집행위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유형으로서는 1) 수입서류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방법과 2) 수입규칙(import rules)의 변경, 수입쿼타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수입허가제도가 있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또한 이러한 보호조치는 EC전체 시장에 대한 수입이 아니고 해당국을 포함한 일부지역에만 국한되어 취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배제된 여타의 EC회원국시장을 통해 수입된 당해 제품이 이 시장을 통하여 당초에 보호조치가 취해진 일부지역으로 간접수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회원국은 여타의 회원국으로부터의 간접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것은 EEC조약 115조에 의거한 것으로 간접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회원국의 신청이 있고 이에 대해 집행위원회가 그런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보호조치의 결정 및 조정절차는 수입감시조치의 경우와 같다. 즉 집행위원회의 보호조치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국은 이 결정을 EC이사회(Council)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회원국의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표결로 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회원국의 위원회결정에 대한 심사신청 3개월 이내에 아무런 결정을 취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의회의 결정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유형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조치(appropriate measures)라고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

29) 무역진흥공사, 전게서, pp. 81-82.

입쿼타의 설정은 물론 수출국과의 자율규제 협상이 포함될 수 있고 실제로 이후자의 절차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1988년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한국산 및 대만산 신발류에 대해 수입쿼타제를 시행한 것이 이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EC 집행위 규정 561/88호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여타 회원국의 반대로 EC이사회에 상정되었으나 이사회는 집행위결정을 재확인하였다. 이 조치는 1990년 6월말로 실효되었으나 이후 EC전체 차원에서 체결된 수출국과의 수출자율규제(VER)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수입감시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회원국은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잠정적인 보호조치(interim protective measures)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잠정적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은 위에서와 같으나 개별회원국의 잠정적 보호조치는 즉각적으로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정부에 통보되어야 하고 집행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 이 때 집행위는 그러한 잠정적 보호조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개별 회원국이 취한 보호조치와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당해 회원국이 이와같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사회는 개별회원국의 잠정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의 최장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제17조 4항). 그러나 개별국이 이와같은 잠정적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있어서의 EC의 획일적인 공동정책의 수행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동 규정(Regulation 288/82)은 각 회원국에 따라 1984년말 및 1987년말 이후에는 그러한 조치를 금지하였다(Title VI).

이상에서 고찰한 EC의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GATT 19조 규정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EC의 수입감시 및 보호조치는 특정국에 대하여 발동될 수 있도록, 즉 선택적 적용(selectivity)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명백하게 GATT의 무차별(MFN)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출국에 대한 보상조치(compensation)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다. 다시 말하면 EC의 수입감시 및 보호조치는 일방적으로 취해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C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규정(safeguards code)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느냐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현재 미국, EC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이 문제는 아래의 세가지 방향 가운데

데 어느 한가지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³⁰⁾

첫째,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선택성(selectivity)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다. 이 경우에 EC는 각종의 회색조치(grey-area arrangement)를 축소해 나가면서 GATT 19조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GATT의 MFN원칙을 희석시키고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무역관행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이므로 수출국 특히 개발도상국의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는 수출국에 귀속되었던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가 수입국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재의 GATT 1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수입국의 긴급수입규제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고 산업피해에 대한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수출국이 긴급수입제한에 따른 보상(compensation)의 요구 또는 보복조치(retaliation)를 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귀결된다면 EC국가들은 현재와 같이 회색조치에 더욱 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일시장의 형성으로 EC의 대외협상력(bargaining power)가 과거에 비해 크게 제고되고 또한 단일시장 형성의 결과 대내외적인 산업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이에 따라 보호주의 압력이 가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GATT의 무차별원칙을 하나의 일반원칙으로서 유지하되 만일 수출국이 동등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수입국이 선택적으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물론 이 경우에 GATT는 감시행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3. 역내 간접수입규제

앞에서 고찰한 EC 전체 차원에서의 수입감시 및 보호조치 이외에도 각회원국은 GATT조약 115조에 의거하여 역외의 제 3국으로부터 여타 회원국에 수입된 제품이 자국으로 간접수입됨으로써 자국의 산업과 경제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간접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EC가 완전한 공동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공동대외통상정책이 완전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EC회원국 사이에 무역장벽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원국간 상품의 자유이동 원칙

30) Koopmann and Scharrer, *op. cit.*, pp. 18-25.

의 적용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취한 수입제한조치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EEC조약 115조는 과도기에 있어서 여타 회원국을 통하여 수입된 상품이 특정 회원국의 국경을 자유로 통과하게 될 때 야기될 수 있는 무역왜곡(deflection of trade)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특정 회원국이 간접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EC단일시장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닐 수 없고 단일시장의 형성과 공동대외통상정책의 통일성 확보에 따라 철폐되어야만 할 성질의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간접수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EC의 통상정책이 아직도 개별회원국의 통상정책과 공동체 통상정책의 잡종(hybrid)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EC 단일시장의 형성은 역내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수입규제도 철폐해야 하는 것이므로 역내간접수입규제 문제는 단일시장 형성과정에서 회원국간 그리고 회원국과 역외의 수출국 사이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사항이 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개별 회원국 차원의 보호조치를 대체할 EC 전체 차원의 보호수준의 설정문제이다. 우선 EC회원국 가운데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회원국은 지금까지 누려 온 산업보호 수준을 삭감하는 것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수입보호를 받아 온 산업의 정치적 압력은 막강하다. 반대로 자국의 산업경쟁력이 비교적 강하여 수입이 자유화되어 있는 회원국들은 앞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EC 전체 차원의 수입보호수준이 결정될 때 불필요하게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이것을 환영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역외의 수출국들은 EC의 단일시장 형성으로 인해 EC의 수입이 확대되기를 원하나 EC는 모든 회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EC 전체의 수입보호수준을 다소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EC의 CATT 의무사항 이행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이와같이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EC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의 형성을 향한 과도기에서 개별 회원국에 의한 간접수입규제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조치가 무제한적으로 용인되는 한 단일시장 형성이란 목적이 상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건을 정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개별 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위원회는 1979년

과 1987년에 EC 공동통상정책의 수립과 단일시장의 형성계획을 고려하여 이러한 간접수입금지조치가 제한된 기간동안 그리고 심각한 무역왜곡현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보다 엄격한 집행위 규정(Commission Regulation)을 결정하였다.

1987년의 집행위 규정(87/433)에 의하면 역내수입금지조치는 특정 제 3국으로부터의 한 회원국에 대한 수입이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그 어려움이 여타 회원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당한 양의 간접수입에 의해 촉발되고 있을 경우 그리고 문제의 제 3국으로부터의 EC의 전체수입이 EC의 대역외 총수입의 1%를 초과할 정도로 중요한 수입품인 경우에만 역내 간접수입금지조치를 통한 그러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취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MFA의 규제를 받는 섬유류의 경우에는 개별 회원국에 할당된 쿼타가 최소 50% 이상 초과소진되고 일반적으로 간접수입물량이 쿼타량의 100%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간접수입금지조치가 허가되도록 되어 있다.³¹⁾

이러한 규정에 따라 1990년 한해에만 총 184건의 역내수입감시조치가 허용되었는데 이것은 1987년의 1,500건, 1989년의 335건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또한 발효중에 있는 보호조치건수는 1987년의 187건에서 1990년 현재 112건으로 감소하였다. 이 112건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109건의 간접수입금지조치는 프랑스(41%), 스페인(29%), 이탈리아(17%), 아일랜드(10%)의 4개국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1984년 이래 한번도 간접수입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간접수입금지조치는 섬유류에 대해 취해지고 있고 그 다음이 전자제품, 자동차의 순이다.³²⁾ 또한 이 조치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국가는 중국, 홍콩, 한국, 대만, 일본에 집중되고 있다.

4 잔존수입제한조치

EC조약 체결이전에 회원국들이 유지해 온 잔존수입제한조치(residual import restrictions)는 제 3국으로부터의 EC수입의 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서 그리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러한 조치의 철폐방법과 관련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EC가 잔존수입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첫째, 우

31) 무역진흥공사, 전계서, pp. 89-92.

32) 상계서, p. 92.

루과이라운드에서의 논의에 따라 잔존수입제한을 철회 또는 제거(rollback)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산업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조치가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현재 EC가 조정하고 있는 구조조정기금, 지역개발기금, 기술개발기금 등이 이러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의 방법은 개별국 차원의 잔존수입제한을 공동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의 협상방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개방적이었던 회원국에 새로운 수입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수입제한조치가 동결(standstill)한다는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EC 집행위원회로서는 이 방법을 피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³³⁾

5. 쌍무협정 및 각종의 회색조치

앞에서 고찰한 역내수입규제조치와 동일한 문제가 각 회원국이 제 3국과 맺고 있는 각종의 쌍무협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EC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맺고 있는 쌍무협정은 약 90개로서 EC차원의 쌍무협정과 맞먹는 숫자이다. 이러한 쌍무협정에 의존하려는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국가들은 영국, 불란서, 이태리 등이다. 또한 이 쌍무협정의 적용을 받는 주요 수출국으로서 선진국 가운데 일본을 들 수 있고 신흥공업국으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순이다. 쌍무협정에 의한 방법으로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품목은 가전제품, 자동차로부터 농산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TV, 라디오, VCR, 금속제 칼 종류, 시계, 장난감, 우산, 신발류, 냉동조리기 등이 있다.³⁴⁾ 다음으로 쌍무협정은 궁극적으로 쿼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VRA) 또는 시장지서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 OMA), 최저가격 협정(minimum price arrangement) 등 소위 회색조치(grey measures) 형태를 띠고 있다.

앞으로 단일시장의 형성이 함께 이러한 쌍무협정들이 어떤 방식으로 EC에 의해 통일되느냐 하는 것은 제 3국의 입장에서 지대한 관심사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의 회색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다. 물론 이 방법은 진정한

33) Koopmann and Scharrer, *op. cit.*, p. 13.

34) 한국무역협회,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총람」, 1991. 3 참고.

의미에서의 단일시장의 추진과는 상충을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역내회원국간 간접수입규제를 필요로 한다.

둘째 개별국 차원의 협정을 공동체 차원의 협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한 EC집행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EC에 의한 쌍무협정의 규제수준이다. 현재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각 회원국 또는 제 3수출국의 입장은 서로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 귀추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수출국의 입장에서 한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EC가 역내시장 및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입규제수준을 낮게 유지한다면 좋은 일이겠으나 역내 국가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강한 불란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다수 회원국의 압력에 못이겨 상당히 높은 규제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국과의 쌍무협상에 있어서보다도 과거에 비하여 훨씬 강력한 협상력(negotiation power)을 발휘하게 될 EC와의 협상에서 개별 수출국이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간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방법은 개별국 차원의 협정과 공동체 차원의 협정을 공존시키는 방법이다. 즉 EC차원의 공동협정 외에 개별국이 자국산업을 추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수입의 문제는 이 경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즉 EC차원에서 제 3수출국에 쌍무쿼타를 부과하지 불란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과도기간 동안 개별국 차원에서의 협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어느 경우이든 회시 조치를 통하여 수입이 규제되어 온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역내무역의 왜곡과 함께 제 3국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의 제고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6. 반덤핑 및 상계관세

EC는 반덤핑에 대한 규제 및 상계관세제도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EC가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역내기업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EC역내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무역장벽도 제거하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로써 경기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EC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중시하는 것은

양언하다는 것이다. EC의 경쟁법(competition law)은 바로 이런 취지를 갖고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EC역내에서의 공정한 시장경쟁조건의 형성을 위한 규제조건 중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제 3국 기업의 덤핑행위나 제 3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EC에 불공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는 일이다.

EC의 시장통합이 보다 공고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이 두가지가 포리의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EC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의 효시는 1968년 대폭적인 관세인하 협상에 성공한 케네디라운드가 종결되자 GATT 6조의 실시를 위해 이사회가 통일적인 반덤핑규정을 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독일, 불란서, 이탈리아만이 국내법으로서 이러한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제해 왔다. 그후 1968년 다시 동경라운드에서 반덤핑에 관한 GATT MTN code가 제정되게 됨에 따라 1979년 새로운 이사회 규정이 제정되었다. 1984년에는 이 규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행화된 절차를 명확화하는 의미에서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2176/84호가 제정되었다. 또한 1987년 6월에는 EC의 수입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순조립공장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EC현지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덤핑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소위 스크루드라이버 규정(Screwdriver Regulation)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88년에는 현행의 이사회 규정 제2423/88호가 제정되어 반덤핑에 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EC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 운영의 특색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⁵⁾ 우선 반덤핑제도에 관한 한 EC집행위원회의 역할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덤핑 및 보조금 지급에 의한 수출이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무역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즉 이들이 불공정한 무역행위인 이상 모든 회원국의 이해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입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가 취해지는 절차 가운데 이사회가 개입되는 것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확정 조치(definitive action)에 관한 결정과정 뿐이다. 여타의 모든 과정은 집행위원회가 거의 전권을 행사한다. 물론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원국 대표와 집행위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가 있어 이것의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최근 EC의회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제도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들 불공정무역행위에 관한 EC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는

35) 한국무역협회, 『Europe 1992』, 1990. 5, pp. 110-18 참조.

회원국 모두의 한결같은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EC의 반덤핑조치는 투명성(transparency)이 극도로 낮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편파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EC의 반덤핑조치가 불공정 무역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경쟁력이 약한 산업, 특히 전자산업 등 전략적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EC는 특히 그것의 반덤핑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된 기업(산업)의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비경쟁적인 시장조건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을 보이고 있다. 즉 문제가 된 수출국 기업이 EC시장에서 덤핑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수출국 시장이 보호되고 있거나 독과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EC는 전세계적으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EC의 경쟁법과 같은 국제규범이 결여되어 있고 설사 이것이 존재하더라도 이것을 국제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한 EC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출국의 시장구조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EC의 입장은 그것의 독특한 덤핑마진 및 가격마진의 산정방법에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들면 정상가격(normal value)의 산정에 있어서 수출국의 해당 기업 만이 아니라 해당산업 전부를 대상으로 한 다거나, 평균덤핑마진의 산정에 있어서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가격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거나 하는 것 등이다.

넷째, 수출국의 반덤핑관세 우회(circumvention of anti-dumping duties) 전략의 사용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스크루드라이버 조항은 바로 이런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이 조항은 최근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체내에 소위 스크루드라이버 조립공장('screwdriver' assembly plants)을 설치하여 문제의 수출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단순조립만을 행하는 방법으로 동 제품을 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부품의 60% 이상이 수출국 부품이면 비록 그것이 공동체 역내에서 생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하나 이와 유사한 규정은 EC의 수입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가 수입한 문제의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관세가 완전하게 제품의 소매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시 반덤핑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36) Chance, *op. cit.*, pp. 75-6.

스크루드라이버 조항은 덤핑혐의를 받은 제 3국 기업의 EC 현지진출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이 기업은 유럽 현지에서 자기 제품의 생산에 필요품의 40% 이상을 타사제품으로 확보할 수 없는 한 여전히 반덤핑관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투자를 통하여 현지에 조립공장을 설치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조항의 의미는 두가지로 해석된다.³⁶⁾ 하나는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다량으로 사용하지 않는 제 3국 기업의 현지단순조립공장 건설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EC의 부품산업의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EC가 장차 현지투자기업이 구매하는 40%의 부품이 문제가 된 수출국을 제외한 제 3의 국가가 아니고 모두 EC원산지의 부품이어야 한다고 더욱 엄격하게 규정될 경우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1990년 3월 GCTT 패널(panel)은 이 조항이 GATT 관련규정에 어긋난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EC는 GATT판정을 인정하면서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회덤핑에 대한 강력한 규칙을 제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1987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약 30여건의 EC현지공장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상국은 주로 일본이고 문제가 된 제품은 전동타자기, 전자식 저울, 수압식 굴착기, 건조식 복사기, 불베어링, 돛-매트릭스 프린터(dot-matrix printer) 등이다. 실제로 이들 제품들의 일본으로부터의 대EC수출은 이런 현지공장의 설립과 함께 급감함으로써 반덤핑조사가 시작되었으나 현지조달 부품비율(40%이상)의 제고를 통해 조사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고 수출기업의 가격인상합의로 해결된 경우도 있다.

다섯째, EC의 반덤핑규정은 공산품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부문에 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것의 좋은 예로서 1987년 우리나라의 現代商船의 오스트리아와 EC간의 운송료가 덤핑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여섯째, EC는 반덤핑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1980년대의 전반기에는 덤핑에 대한 확정관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주로 수출업자와 역내생산자 사이의 가격인상합의(price undertakings) 방식을 활용하여 왔으나 1987년 이후에는 가격인상합의 보다는 확정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상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EC의 반덤핑제도의 1980년대 운용상황을 보면 조사개시 건수로 볼 때 1982년을 정점(55건)으로 이후 다소 감소하는 추세

37) 무역진흥공사, 전계서, pp.182-192.

를 보이고 있다.³⁷⁾ 1980년 1월 이후 발효중인 반덤핑조치 건수도 1986년 187건에서 1989년에는 120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반덤핑제소건수를 대상국별로 보면 공·구공산권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브라질,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신흥공업국들의 순이다. 특기할 것은 1987년 이후 반덤핑제소건수는 한국이 8건으로서 가장 빈번하게 제소되고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EC가 반덤핑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출국내의 시장경쟁 또는 독과점의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EC의 기업 또는 EC국가들이 대 EC수출국 가운데 특히 시장경쟁이 취약한 국가에 보다 주목하고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다.

반덤핑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주요 품목으로서는 화학제품 및 이와 관련된 물질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는 기계공업제품, 섬유, 철 및 철강, 사무기기 및 소비자용 전자제품의 순이다.³⁸⁾

이상에서 주로 반덤핑관세조치에 대해 고찰하였거니와 EC의 상계관세 부과조치는 반덤핑관세조치에 비하여 훨씬 덜 사용되었다. 1980년에서 1989년 사이에 총 10건의 상계관세조치가 취해진 데 불과하다. 이와같이 EC에서 상계관세조치가 비교적 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달리 EC각국이 산업구조조정, 기술개발, 지역개발 등 여러가지 정책목적에서 상당히 폭넓은 국가보조금지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보조금에 대한 EC의 통일성 있는 규칙이 제정되고 이것이 집행되면서 대 EC 수출국의 보조금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조치도 활발하게 사용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EC가 상당히 복잡하고 차별적인 대외무역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원산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EC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관세 적용때문만이 아니고 쿼타협정 및 반덤핑우회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EC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C는 기본적으로 두가지의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갖고 있다. 하나는 비특혜국 원산지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특혜국 원산지 규정이다. 여기에서 특혜국 원산지 규정이란 EC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준회원국 협정(Association

38) EC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대상국가 및 품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P.K.M. Tharakan, "The Sector-Country Incidence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Cases in the European Communities," in L.B.M. Mennes and Jacob Kol (eds.), *European Trade Policies and the Developing World*(London: Routledge, 1988), pp.99-142 참고.

Agreements)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GSP제도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은 어떤 상품의 충분한 변형(sufficient transformation)이라는 기준에 의거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충분한 변형이란 보통 관세분류상 4단위 細番(tariff heading)의 변화가 있는 것을 지칭한다. 다만 GSP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집행위원회 규정(693/88호)이 적용된다.

이에 비하여 비특혜국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에 관한 EC의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제802/68호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어떤 제품의 생산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어 있을 때(예를 들면 주요부품은 한국에서 구매하고, 나머지 부품은 일본이나 EC에서 구매하여, EC나 동구권 국가에서 조립생산하는 경우) 이 제품의 원산지는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마지막 실질적 작업 또는 공정(last substantial operation or process is carried out)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실질적 공정의 수행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는 기술검사(technical test)에 의한 방법이 있고 조립공정이 보다 복잡하여 기술검사가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부가가치 접근방법(value-added approach)이 사용된다.

EC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공동해석방법을 개발하고 모든 회원국에 원산지 규정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12개 회원국 대표와 집행위원회의 대표로 구성되고 후자가 의장직을 맡는 원산지 위원회(Origin Committee)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집행위의 제안을 토대로 결정을 내리게 되며 동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면 각 회원국에 통보되어 EC전역에서 유효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원산지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집행위원회는 강제적인 시행규정을 제안할 수 있고, 이 제안이 이사회에서 기중다수결로 채택된 경우에는 집행위규정(Commission Regulation)이 구속력을 갖게 된다. 원산지규정이 제정된 1968년 이후 현재까지 14개의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 집행위규정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EC의 원산지규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모호하며 수입규제적 혹은 산업정책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특혜국 원산지 규정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 비특혜국을 대상으로 한 EC의 원산지 규정은 또 다시 첫째, 특정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 둘째 EC에 대한 수출상품의 원산지 규정, 셋째 EC역내에서 조립된 제품의 원산지 규정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³⁹⁾

39) Chance, *op. cit.*, pp. 76-77.

(1) 특정품목의 원산지 판정

EC는 특정품목에 대해 특별한 원산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라디오 및 TV 수상기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기준이 적용되었다. 이와같이 특정 품목에 대해 별도의 원산지 규정을 정하는 방법은 1989년에 집적회로(IC)와 사진복사기로 확대되었다. 후자의 두 품목은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채택되었는데 이 규정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정(decisive process)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관계된 것들이다. 예를 들면 집적회로의 경우에 확산공정(diffusion process)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 즉 한국에서 완성품의 조립, 검사, 포장 등이 이루어진 IC라 할지라도 그것의 핵심공정인 확산공정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일본을 이 IC 원산지로 본다 는 것이다.

사실 “마지막의 실질적 공정”의 의미는 애매하고 제품마다의 각기 다른 공정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불확실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사회사가 미국에서 조립생산한 복사기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따라 미국산이 될 수도 있고 일본산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특정제품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한 원산지 기준이 무엇이나, 특히 어떤 수준의 부품의 현지조달(local content)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좌우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특정품목의 원산지 규정을 개별 사례별로 정하는 것은 교역상대국들로 하여금 EC에 대한 수출 및 EC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대EC수출에 대한 원산지규정

이것은 각종의 수입수량제한 조치 또는 반덤핑관세 등 특정 수출국 제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일본산 전동타자기가 반덤핑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안에 일본의 수출업자가 대만에서 전동타자기를 조립하여 대만이 원산지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EC는 그것의 마지막의 실질적 공정이 대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만을 원산지라 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그 제품이 대만에서 조립되고 수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으로 간주되어 반덤핑관세부과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EC는 이와같이 원산지기준을 보다 엄밀하게 규정함으로써 EC의 기존의 수입제한조치(반덤핑, 수량수입제한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3) EC역내 조립제품의 원산지

원산지 문제는 역외의 제 3국에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완성되어 EC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EC내에서 조립된 제품의 경우에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것은 원산지가 제 3국이든 EC든 관계없이 일단 EC시장에 적법하게 들어 온 제품은 EC시장 전체에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회원국내에서 제 3국에 의하여 조립된 제품의 마지막 실질적 공정이 다른 곳에서 행해져 그 제품의 원산지가 EC가 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제품은 역내에서의 자유유통(free circulation)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회원국내에서 생산된 EC제품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역내시장의 통합정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대단히 큰 이득이 아닐 수 없고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회원국들이 자율규제협정, 수입수량제한 기타 각종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갖고 있는 경우에 원산지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예를 들면 불란서가 일본 자동차에 대해 수출자율규제협정을 맺고 있고 한 일본자동차회사가 영국에 자동차공장을 건설하여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 때 이 회사가 생산한 자동차의 원산지를 일본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EC라고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회원국간에 대단히 중대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EC 역내에 조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EC부품을 60%이상 사용하고 있다면 EC원산지로 보자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불란서는 EC부품사용비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는 불란서와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첨단기술부품(high-tech components)이 EC부품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론이 회원국 사이에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 제 3국의 대 EC 현지투자의 수준과 내용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규정 여하에 따라 EC역내에서의 기술개발 활동의 수준, 부품산업의 성장 등이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IV. 결 론

1987년 단일유럽법의 시행 이후 EC는 단일시장 형성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통합체로의 발돋움을 계속하고 있다. EC의 이러한 노력은 급변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에 EC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EC의 웅장한 시도는 앞으로의 세계 정치경제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EC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자유무역지대 (NAFTA) 협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권 (APEC) 형성 추진 등 지역 블록(regional bloc)화의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EC통합의 앞길이 아주 밝은 것만은 아니다. 1992년말까지 단일시장을 형성한다는 계획이 대체로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나 각 회원국의 이해대립으로 인하여 경제통합효과가 전면적으로 발휘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회원국들이 중요한 선거를 앞에 두고 있다, 당초 EC 단일시장 형성에 적극적이었던 역내기업들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시장경쟁 압력 속에서 단일시장의 장래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⁰⁾

이런 문제점은 대외공동통상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C의 대외공동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각 회원국 사이의 산업발전 단계의 차이, 국제경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이해가 상충되고 있고, 그 결과 각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은 애당초의 정책목표와는 상반되게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EC역내의 무역장벽의 해소에 따라 경쟁압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회원국들이 자국산업기반의 유지와 국가위신을 살리기 위하여 산업정책적 개입을 강화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EC 단일시장의 추진과 함께 EC 국가들의 EC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부지향(inward-looking)적 성향이 고조되고 있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그 결과 오늘날 EC의 통상정책은 통상정책으로서만이 아니고 산업정책 수단(industrial policy instrument)로서의 속성을 강하게 띠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들어 반덤핑조치를 통하여 해당산업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쌍무협정의 체결 등 각종의 회색조치를 통하여 수입규제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EC가 산업정책적 목적으로 통상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같이 볼 때 앞으로 EC의 통상정책은 단지 통상정책의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EC 단일시장의 형성과정, 그것의 진전속도, 방향 및 구체적 내용, EC경쟁정책의 적용 강도,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정책의 운용방향, 각종의 사회적 규제(환경, 소비자안전보호 등)에 대한 정책 등과 아울러 폭넓게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

40) *The Economist*, "A Survey of Business in Europe," June 8, 1991.

는 어쩌면 당연한 결론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EC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EC
가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정치적, 또는 제도적 속성을 지닌 새로운 경제
체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